

화재보험의 기원

1. 영국

영국의 화재보험은 당시 런던시의 85%에 해당하는 13,200호를 4일 동안에 걸쳐 소실시킨 1666년 9월 2일의 유명한 런던 화재(일명 Great Fire)가 계기가 되어 탄생하였다. 종래는 이 런던 화재의 다음해인 1667년에, 니코라스·바론(Nicholas Barbon)이라는 의사가 영국 최초의 화재보험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이 바론 이외의 3명이 영리를 목적으로 1681년 9월에 설립한 Fire Office라는 합명회사가 영국 최초의 화재보험 회사였다. 영국에서는 동년 11월에, 런던시가 중심이 되어 시민상호의 조합이라는 입장에서 시영의 화재보험을 실시하였지만, 시가 이러한 위험한 상사부문에 진출한 것, 더우기 3년 후인 1684년에 영구에서 2번째 시영화재보험회사인 Friendly Society사를 윌리엄 헤일(William Hale)과 헨리 스펠만(Henry Spelman)이 창설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지만, 동사는 우애조합(友愛組合)이라고 하는 회사명과는 정반대로 창업자 2인에게만 유리하였으며 또한 영업성이 강하였다.

다음에 출현한 화재보험회사는 1696년에 창립한 Hand-in-Hand사였다. 이상과 같이 17세기말의 런던에서는 대화(大火)

를 계기로 Fire Office, Friendly Society, Hand-in-Hand 등 3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3사 모두 단지 건물의 화재보험만을 취급하고, 동산은 담보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곧 영국 최초로 동산보험 인수가 소화기 발명으로 이름을 얻은 찰스 포베이(Charles Povey)에 의해 1708년에 이루어졌다. 포베이가 동산의 화재보험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Exchange House Office의 영업은 2년 후에 행해졌으며, 현재도 실재하고 있는 Sun Fire Office에 인계되어졌다.

1714년에 가재(家財)와 상품의 화재보험인수를 목적으로 한 Union Fire Insurance Office사가 영업을 개시하고 또한 1717년에는 Westminster사가 웨스트 민스터 지역소재 건물의 화재보험인수를 목표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더우기 1720년이 되면서, 영국의 보험사상 저명한 2대회사인 The London Assurance와 The Royal Exchange Assurance가 설립되었다. 양사는 설립한 익년(1721년)부터 화재보험의 인수도 개시하여 영국의 화재보험은 양사의 창설에 의해 최초로 주식조직의 근대적인 보험회사를 유지하게 되었다.

2. 독일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기원은 중세 프랑코 왕조시대에 발생한 길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길드는 중세에 구주대륙의 북부에 존재했던 공제조합(共濟組合)으로, 그 주된 내용은 사람의 사망 및 화재발생시에 있어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5세기에 들어서면 화재의 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공제조합(Brandgilde)이 덴마크에 접한 독일북단의 Schleswig-Holstein 지방에 발달하였고, 그 후 다른 독일 북부지방에도 이것에 비교되는 것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1591년에 함부르크에서 100명의 맥주 제조업자가 결성한 함부르크 화재보험조합(Hamburger Feuerkontrakt)이 특히 유명하다. 17세기에 들어와 동 시는 대소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때문에 이들 공제조합은 대단한 곤경에 봉착하게 되자 1676년에 이들의 조합을 통합하여 『시영』의 건물보험 기관인 함부르크 일반 화재금고(Hamburger General-Feuerkasse)를 설립하였다. 이 화재금고는 세계에 있어 공영화재보험의 최초의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신구 그리스도교도에 기인한 30년 전쟁(1618~1648)의 결과, 국토는 파괴되고, 생산기구는 장기에 걸쳐 파괴되어 제후의 재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각 영주는 무엇인가 특별

한 재원획득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전술한 함부르크화재보험금고의 예에 따라서 화재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각 영주의 지대한 관심이었다. 그 결과 먼저 프로샤에서 1781년에 베르린시 시영의 화재보험소(Feuersozietat)가 설립되는 것을 필두로 각지에 관영 또는 공영의 화재보험소가 차례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은 보험에로의 가입제도와 재축의무(再築義務)를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1861년에 건물의 사영 화재보험이 허가됨에 따라, 이제까지 오로지 동산보험의 인수와 관·공영보험의 초과보험 재보험 인수만을 취급하여 왔던 사영의 보험회사도, 건물의 화재보험 인수를 개시하여 19세기말에는 동산보험 인수의 증가로 보험계약상에서는 사영회사가 관·공영단체의 계약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원래 독일의 관·공영 화재보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시되기 보다는 각시동(各市洞)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내지 공안정책으로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재보험도 점차 사영조직으로 이행되어, 그 후 공영보험은 건물의 화재보험 부문에서 단지 역사적인 명성을 차지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3. 프랑스

중세의 북프랑스에서는 화재의 재산손해에 대한 원조제도는 길드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 1717년에 화재 이재자 사무소(Bureaux des Incendies)를 파리에 설치하여, 이재자 구제를 위한 특별한 기부금 모집을 행하였다. 1753년에 제네랄보험회사(Société d'Assurances Générales)라는 민간회사를 설립하여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을 영업했다. 1786년에 화재보험만을 영업하는 보험회사(이 회사는 익년 로얄보험회사 <Compagnie Royale d'Assurances>라 칭했다)를 설립하였다.

동사는 1787년에 생명보험의 영업면허를 받았는데, 1788년에는 로얄화재(RoyaleIncendie)와 로얄생명(RoyaleVie)의 2사로 분리되었다.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혁명은 “보험은 휴머니티의 서비스를 금전의 서비스로 대체하여, 인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동정의 인간 감정을 어느 사이인가 해친다”라는 이유로 모든 보험기업과 보험금고를 폐지하고 말았다. 황제 나폴레옹 1세도 보험을 좋아하지 않았다. 제1제정 이후로 북프랑스와 동프랑스에 지역 화재보험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었다.

왕정 복고후 파리시 부동산 상호

보험회사(Société d'Assurances mutuelles immobilières de la Ville de Paris, 1816년 설립의 화재보험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상호회사가 설립되었다. 주식조직의 보험회사도 뒤에 허가되어 제네랄보험회사(Compagnie d'Assurances Générales, 1819년 설립), 로얄화재(Royal Incendie, 신회사, 1820년 설립), 유니온화재(Union Incendie, 1828년 설립), 소레이유화재(Soleil Incendie, 1829년 설립)등이 설립되었다.

4. 미국

미합중국에 있어서의 최초의 화재보험회사는 1752년에 런던의 Hand-in-Hand사를 모델로 벤자민 프랭크린등에 의해,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필라델피아 컨트리 브션십(Philadelphia Contributionship for the Insurance of Houses from Loss by Fire)이다. 이 회사는 상호회사에 해당하는 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현재 미국 최고의 화재보험회사이다. 1784년에 필라델피아사의 일부 임원을 나누어 뮤추얼 어슈어런스(Mutual Assurance Company for Insuring Houses from Loss by Fire)를 설립했다. 1794년에는 볼티모어 에퀴터블(Baltimore Equitable Society)을 설립하였다. 동시에

상호조직에 의한 주택화재보험을 영업하고 있다. 이들 3사는 모두 보험의 목적인 주택이 존재하는 한 보험계약은 계속된다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787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뮤추얼 파이어(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of the City of New York : 후에 Knickerbocker Fire Ins. Co.로 개칭되고 1890년에는 Home에 매수됨)가 뉴욕에 설립되었다. 1792년에 미국 최초의 주식조직에 의한 보험회사로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노스 아메리카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를 펜실베이니아에 설립하였다. 동사는 1794년에 면허를 얻어 해상보험을 주로 화재보험을 종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835년의 뉴욕대화에 의해 주 단위의 지역적인 화재보험 사업이 부적당한 것을 실증한 중요한 계기로서 몇개 주 또는 전미국을 화재보험 시장으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후 경제금융 사정과 맞물려 약소회사는 파산되었으나, 존속된 회사는 화재보험에 대한 니드를 높힘으로써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특히 주식조직의 대형 화재보험회사는 시장으로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9세기 초에는 다수의 화재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들 가운데 주요 회사로서는 Hartford

Fire(1810), Albany Fire(1811년), Aetna Fire(1819년), Pennsylvania Fire(1825년)등이 있다. 19세기 중엽에는 시장의 호황을 반영하여 다수의 화재보험회사가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들 가운데 주요 회사로는 American(1864년), Springfield Fire & Marine(1849년), Niagara(1850년), Connecticut Fire(1850년), Home(1853년), Continental(1853년), Phoenix Fire(1854년), Fireman's Fund(1863년), Globe & Rutgers Fire(1863년), St. Paul Fire & Marine(1865년)등이 있었다.

5. 일본

1869년(明治2년) 3월, 일본정부는 神奈川보세창고내의 화물에 대해 화재손상의 청부를 하였다(1886년 <明治 1819년> 경에는 폐지되었다고 추측된다). 이것은 일본인에 의한 화재보험 업무의 최초라고 볼 수 있다.

1887년(明治 20년) 7월 23일에 유한책임 동경화재보험회사(주식조직의 회사, 현재의 安田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가 설립 인가되어 익년 10월 1일부터 화재보험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일본 최초의 화재보험회사의 개업이었다. 1891년(明治 24년)에 明治화재보험주식회사

(현재의 東京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 익년 1892년(明治 25년)에 일본화재보험주식회사(현재의 일본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가 각각 설립되어 화재보험 시장은 2년반 정도의 독점에 종지부를 마치고 경쟁상태에 돌입하였다. 1893~94(明治 26~37년)에 화재보험을 영업할 보험회사가 8사 신설되었지만 그것은 모두 포말회사(泡沫會社)였다.

1896년(明治 29년)에 日本酒造화재보험주식회사(현재의 일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 1897년(明治 30년)에 少樽화물화재보험주식회사(현재의 千代田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와 横兵화재보험주식회사(현재의 同和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 1898년(明治 31년)에 東京물품화재보험주식회사(현재의 日動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의 하나)가 각각 설립되어 화재보험시장에 참여하였다. 이들 4사 이외에, 1896!~902년(明治 29~35년)에 14사의 화재보험회사가 설립되었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등으로 1909년(明治 42년)경에 모두 물거품처럼 소멸했다.

6. 한국

한국에서의 화재보험 설립은 1919년 11월 조선상업회의소연합

회에서 조선화재 설립에 관한 논의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1920년 초기부터 경제사정의 악화로 회사 설립이 지연되어 오다가 1921년 12월 15일 조선식산은행안에서 설립사무소를 두고 본격적으로 서두르게 되었다.

1922년 7월 8일 조선화재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설립을 위한 가인가를 받는데, 특별한 애로는 없었다. 그 이유는 동사의 설립의 의, 자본과 인적 구성, 대주주 등을 볼 때 당국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설립 자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설립 인가는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그 때는 폐지된 회사령이 보험법에 대하여 계속 효력이 있었으므로 조선화재는 회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의 보험업 인가를 받았다.

조선화재는 설립 가인가를 받음 즉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조선화재는 자본금 5백만원(납입 자본금 125만원)으로 1922년 10월 1일 개업하였으며, 보험종목은 화재·해상·운송보험의 세가지 이었고 이들의 재보험 수재(受再)·출재(出再)업무를 하였다. 조선화재의 납입자본금 1백25만원은 당시 선박 12척의 가액에 상당하는 신설회사로서 재보험 교섭까지 난관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화재보험은 급별, 지역별, 건

물 호수별로 인수한도액을 제한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 화재보험을 유일종목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설립이 촉진되었다. 군정기간 3년동안 면허를 받은 화재보험회사는 조선화재를 제외하고 신동아, 대한, 서울, 국제, 한국, 고려 대동 등의 7사 이었으며 6·25동란 이전까지 동방간이화재와 제일화재가 추가되어 기존 조선화재와 더불어 10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조선화재가 업무재개를 서두르는 그때에 한편에서는 화재보험회사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1945년 10월 30일 하원준 등 6인이 중심이 되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사가 자본금 1천2백50만원으로 1946년 5월 20일 개업한 대한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 하준원)이다. 그러나 이 회사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는 자본금 1천만원으로 1946년 2월 4일 군정청의 면허를 받아 그해 4월 1일 개업한 신동아 손해보험주식회사(대표 황병석)이다.

위의 조선, 신동아, 대한의 3사에 이어 1946년 5월 25일 서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 안정원)가 자본금 1천2백50만원으로 설립됨에 따라 서로 협력할 필요성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동년 8월 1일 조선손해보험협회가 발족되고 이후 타사의 설립을 강력하

게 반대하였다.

1947년 2월 1일 최초의 재보험회사로서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가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재보험 전업이 여의치 않아 1949년 2월 1일 원수사(국제손해보험주식회사)로 전향하였다. 이어서 동년 7월 1일 한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2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1947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 유기룡)가 자본금 2천만원으로 1948년 3월 15일 현지에서 개업하였다. 미군정기간에 신설된 화재보험회사는 위의 6사 이외에도 그 이전에 면허를 받아 1948년 8월 15일 발족한 대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 이정범)가 있다. ☞



고 양 곤
〈전북대 교수, 상학박사〉